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동일명칭 사용금지 규정 신설〉

■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83호)

2025. 4.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동일명칭 사용금지 규정 신설	2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1인
2. 제안일 : 2025. 2. 24.
3. 회부일 : 2025. 2.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여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보호하고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동일명칭 사용금지 규정 신설

- 개정안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이 아닌 자가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조의2(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독립기념관이 아닌 자는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u>

-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설립목적·법인격·업무·임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 사용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이 아닌 자가 독립기념관과 동일한 명칭을 제한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단체 등이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이 아닌 자는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 등이 “독립기념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특정한 자격자 또는 자격단체의 명칭이나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 등의 명칭을 해당 단체 등이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특정 단체 등에게 해당 명칭의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임.

○ 이는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 등이 해당 명칭을 사용하여 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명칭으로 표현하는 행위 등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명칭 사용 금지 규정의 신설은 명칭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해당 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유사 단체의 난립을 방지할 필요성 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 방식에는 그 제한 범위에 따라 해당 단체 등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의 사용만을 금지하는 방식과 유사한 명칭까지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동일명칭 사용금지는 해당 명칭과 완전히 일치하는 명칭만의 사용을 금지하고, 다른 단체 등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¹⁾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는 해당 단체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의 사용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그 제한 범위가 넓어지므로, 유사명칭까지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게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지, 해당 사안에 있어 유사명칭의 사용에 따른 피해가 중대하여 명칭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법제처 법령해석 16-0553, 06-0064 등; 같은 취지로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704.

□ 독립기념관은 개별 법률(「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²⁾으로,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점, 국가적 상징성 및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 등 공적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려는 개정안은 입법 필요성을 긍정할 수 있음.

□ 또한, 개정안은 “독립기념관”과 동일한 명칭에 한하여만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그 제한 범위를 한정하여 다른 단체 또는 국민의 행위 제약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유사명칭 사용까지 금지할 경우 그 제한 범위가 일반인이 독립기념관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명칭까지 확대되게 되는데, 독립기념관 외의 단체 등이 독립운동 등을 추모·기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³⁾ 명칭 사용의 제한 범위는 개정안과 같이 최소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특수법인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국가적 정책이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법」 또는 「상법」 외의 특별법 또는 특별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함(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31.).

3)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독립운동기념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역 독립운동에 관한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⁴⁾가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과 유사한 명칭까지 사용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 다만, 개정안은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만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수단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데, 개정안에 따른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벌 또는 행정질서벌(과태료)과 같은 제재수단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성,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⁵⁾

○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독립기념관과 같이 재단법인의 성질을 갖는 단체의 경우 현행 입법례는, 동일명칭의 사용만을 금지하고 제재수단으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방식, 유사명칭의 사용까지 금지하고 제재수단으로 과태료를 규정하는 방식, 명칭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방식 등 각 기관의 성격 및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있음.⁶⁾⁷⁾

4)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독립 관련 현충시설 기념관 중 6곳(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밀양 독립운동 기념관, 운문면 3·18독립운동 기념관,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5) 법제처는 기관 명칭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별로 다루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법제처,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기준, 557).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과 같이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도 있음.

7) 다만, 특수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유사명칭의 사용까지 금지하고, 제재수단으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재단법인의 성질을 갖는 특수법인의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

구분	해당 법률
(제한 범위) 동일명칭 (제재수단) 과태료	「국회미래연구원법」, 「한국재정정보원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제한 범위) 유사명칭 (제재수단) 과태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국립항공박물관법」, 「국립농업박물관법」, 「국립해양박물관법」, 「보건환경연구원법」 등
명칭 사용 제한 없음	「정부법무공단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전쟁기념사업회법」 등

- 국가보훈부 소관 특수법인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을 회원으로 하는 보훈단체들은 설립 근거 법률에서 타 단체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2] 국가보훈부 소관 단체의 명칭 사용에 관한 제한 규정

구분	근거 법률	명칭 사용 금지	위반 시 제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⁸⁾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단체의 명칭에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 사용 금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이상을 종합하면, 독립기념관이 아닌 자가 “독립기념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독립기념관의 공신력 제고 및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반 시 제재수단의 규정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독립기념관의 건립 취지와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들을 아우르는 국가적 상징성을 감안하여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독립기념관은, 개정안에 동의하면서도 “독립기념관”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음.
- 반면, 경기도는 지역의 독립운동을 계승·보존하고 기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념관과 같이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훼손할 의도나 가능성이 없는 기념관의 경우까지 일괄적으로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12